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6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지훈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0,000,000원,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원고와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D가 ‘회장’ 또는 ‘상임고문’ 등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들과 ‘B 치유센터’ 분양 및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7. 12.경 위 투자계약에 따라 D가 지정한 피고 또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300,000,000원(원고 220,000,000원 + 선정자 80,000,000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220,000,000원, 선정자에게 80,000,000원을 각각 반환하고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갑 제1부터 4호증까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직접 또는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인인 D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투자계약서 인증서 사본)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계약이 무효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이유 없다(D의 대리행위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리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무권대리 추인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들과 D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좇아 갑이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으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2) 설령 원고들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 D의 지시에 좇아 피고에 송금하였고 나아가 위 계약이 무효라 하여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계약이 무효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들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원고의 2021. 2. 26. 자 준비서면 제2, 4쪽 참조), 다음과 같다.

1)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갑 제1부터 4호증까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 효 량, 판사 김해마루, 판사 김 도 완

별지.

선정자 목록

1. A

2. C

끝.

